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정 2009. 8. 28.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대구대학교 총장후보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총장후보 선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① 총장 입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장후보(이하 “총장”이라 한다)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총장 입후보자의 등록신청을 평일(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

제3조(등록서류) 총장 입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총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서(소정 서식)
2. 이력서(소정 서식)
3. 총장 입후보자 추천인 명부(소정 서식)
4. 서약서(소정 서식)
5. 선거공보 등에 게재할 원고(소정 서식)
6. 대학발전계획안(A4 용지 10쪽 이내)
7.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 5cm×7cm) 3매

제4조(총장 입후보자의 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관위는 총장 입후보자의 등록신청을 심사하여 등록을 공고하며 등록무효, 사퇴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공고한다.

제5조(선거인명부 작성과 송부) ① 선관위는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명부 3부를 작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작성 완료 후 2일 이내에 열람용 선거인명부 1부를 각 단과대학 교수회, 노동조합, 총무팀으로 송부한다.

제6조(선거인명부 열람) ① 총장후보선거권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단과대학 교수회, 노동조합, 총무팀을 통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일 3일전까지로 한다.

제7조(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과 결정) ① 선거인명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6조 제2항의 열람기간 내에 단과대학 교수회 회장, 노동조합, 총무팀을 통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선관위에서 하며 위원장은 결정 즉시 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한다.

제8조(선거운동의 기간) 선거운동은 총장 입후보자의 등록신청 후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9조(선거유인물 등의 제작) 선거유인물 등의 제작은 선관위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총장 입후보자는 선관위에 사본을 제출한 후 개인 홍보용 유인물을 1회(A4 용지 6쪽 이내)에 한해 제작·배포할 수 있고, 선관위 지정 포탈게시판을 통해서는 3회에 한해 각 10 MB 이하(본문 및 첨부파일 포함)의 파일크기로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금지행위) ① 선관위 구성일 부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수막, 입간판, 표찰, 광고탑, 광고판 기타 시설의 설치 또는 게시
2. 신문, 잡지, 기타의 간행물이나 방송시설(유·무선)을 통한 광고
3. 단합대회, 향우회, 동문회, 야유회, 종친회, 친목회 등의 집회
4. 허위사실의 유포 및 비방행위
5.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
6. 선거권자에 행하는 기부행위
7.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방해행위
8. 기타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금지된 행위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선관위는 경고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소견발표 및 찬조연설) ① 총장 입후보자는 선관위가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② 소견 발표 시 당해 총장 입후보자가 추천한 1인에 한하여 찬조연설을 할 수 있다.

제12조(질의) 선거권자는 소견 발표 후 총장 입후보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자가 아닌 사람은 선관위의 허가를 받아 총장 입후보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제13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써 한다.

② 투표는 직접·비밀로 한다.

③ 부재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1차 투표에 한하여 투표할 수 있다.

④ 기표방법, 투표용지의 양식 및 부재자투표방법은 선관위가 결정한다.

제14조(투표소의 설치) 선관위는 선거일 2일전까지 투표소의 소재지를 공고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선관위가 결정한다.

제16조(투표의 제한) 선거권자가 고의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때에는 투표용지를 재교부하지 않는다.

제17조(투표의 보조)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서 직접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 선관위는 본인이 지정하는 2인 이하를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투표참관) ① 선관위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한다.

② 각 총장 입후보자는 투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1일전까지 선관위에 신고한다.

③ 선거권자가 아닌 사람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19조(투표소의 출입제한) 투표자, 선관위 위원, 선거사무 종사원, 투표참관인 및 선관위가 허락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제20조(선거의 연기) 선관위는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일을 다시 정한다.

제21조(개표관리) ① 개표사무는 선관위가 관리한다.

② 개표는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서 즉시 실시한다.

제22조(개표참관) ① 선관위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한다.

② 각 총장 입후보자는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1일전까지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권자가 아닌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④ 개표참관인과 투표참관인은 동일인이 겸할 수 없다.

제23조(개표소의 출입제한) 선관위 위원, 선거사무 종사원, 개표참관인 및 선관위가 허락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제24조(소견발표 및 개표의 방청) 선거권자는 소견발표 및 개표의 진행상황을 방청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자가 아닌 사람은 선관위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제25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지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투표용지에 위원장이 지정한 날인이 없는 것
3.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2 이상의 난에 기표를 한 것
5. 어느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것
6. 지정된 기표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것

제26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관위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27조(직원의 선거참여비율 및 득표 산정) ① 직원의 선거참여비율 및 입후보자별 직원득표의 산정은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출규정 제9조에 따라 선거일 전에 결정한다.

② 직원의 선거참여비율 및 입후보자별 직원득표의 산정방법은 선거일 전에 공고한다.

제28조(당선자 통보와 공고) 선관위 위원장은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선자 및 교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29조(선거이의에 대한 결정) ①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 또는 총장 입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선관위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당선무효 등의 결정) 선관위는 이의신청의 사유가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선거의 무효 또는 당선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제31조(선거자문위원 위촉 및 선거사무 협조 요청) ① 선관위는 선거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관련부처에 사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선거방해 및 선거규정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선거를 방해하거나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이를 선거공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보칙)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선관위에서 의결한 날(2009년 8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